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작업 안전 및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명(7급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1명을 직급조정(4·5급 1명→4급 1명)하며, 디지털소통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1명(일반임기제6급 1명)을 증원하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업인안전팀을 폐지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분장사무를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6. ~ 1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농촌지원정책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재해대응과·식량산업기술팀 및 농업인안전팀”을 “농촌지원정책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재해대응과·농업인안전과 및 식량산업기술팀”으로, “및 재해대응과장”을 “·재해대응과장 및 농업인안전과장”으로,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인안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농업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을 “농촌지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인안전팀장”을 “농업인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개선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기계, 농식품”을 각각 “농업환경, 농업공학”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급”을 “6급 1명)과 디지털 홍보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으로 한다.

제39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9장에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평가대상 조직)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10장(제41조)을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9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기록연구원”을 “기록연구원”으로, “농업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를 “기록연구사”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40”을 “345”로, 일반직 계 “339”를 “344”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원 또는 농촌지도관 “12”를 “13”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수의연구원·보건연구원·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지도관 “16”을 “15”로,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6”을 “47”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9”를 “20”으로, 농촌지도관 “1”을 “2”로, 농업연구사 “23”을 “24”로, 농촌지도사 “24”를 “2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41”을 “346”으로, 일반직 계 “340”을 “345”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2”를 “13”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6”을 “15”로,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5”를 “46”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7”을 “18”로, 농촌지도관 “2”를 “3”으로, 농업연구사 및 농촌지도사 “23”을 각각 “24”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⑨ (생 략)

⑩ 삭 제

⑪ 농업인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신 설>

2. 3. (생 략)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 ③
(생 략)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기계, 농식품 등 관련 신기술 조기 보급·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농기계, 농식품 등 관련 신기술의 농가실증(農家實證)및 시범사업 추진

3. 4. (생 략)

⑤ (생 략)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⑨ 농업인안전과장-----
-----.

1. (현행과 같음)

2.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개선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11조(국립농업과학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농업환경, 농업공학 -----

2. 농업환경, 농업공학 -----

3.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정원-----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 설>

<신 설>

제10장 한시정원

제41조(한시정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6급 1
명)과 디지털 홍보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
--.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40조(평가대상 조직) 농촌진흥
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
의2와 같다.

<삭 제>

<삭 제>

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에 둔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1호, 같은 조 제11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업인안전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업인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
----- . <단서 삭제>

<삭 제>

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농업인
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
촌자원과장이 분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9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6호 농
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
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
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
업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
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연
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공
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
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1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9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기

록연구관 -----

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정원
2명(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
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
·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
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
지도사 1명, 농업연구사·기록
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
로 본다.

② (생략)

----- 기록연구사 -----

-----.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340</u>	<u>345</u>	+5
.	.	.	
.	.	.	
일반직 계	<u>339</u>	<u>344</u>	+5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12</u>	<u>13</u>	+1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연구 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16</u>	<u>15</u>	-1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 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 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46</u>	<u>47</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농업 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19</u>	<u>20</u>	+1
·	·	·	
·	·	·	
농촌지도관	<u>1</u>	<u>2</u>	+1
·	·	·	
농업연구사	<u>23</u>	<u>24</u>	+1
·	·	·	
·	·	·	
농촌지도사	<u>24</u>	<u>25</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341</u>	<u>346</u>	+5
.	.	.	
.	.	.	
일반직 계	<u>340</u>	<u>345</u>	+5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농업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12</u>	<u>13</u>	+1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농업사무관 · 공업연구 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u>16</u>	<u>15</u>	-1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 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 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45</u>	<u>46</u>	+1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농업 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u>17</u>	<u>18</u>	+1
.	.	.	
.	.	.	
농촌지도관	<u>2</u>	<u>3</u>	+1
농업연구사	<u>23</u>	<u>24</u>	+1
.	.	.	
.	.	.	
농촌지도사	<u>23</u>	<u>24</u>	+1
.	.	.	
.	.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의2]<신 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0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과	3명 (7급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삭 제>